

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231호, **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수입 증가와 지출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수입·지출 계획이 변경됨.
- 나.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수입이 당초 48,117백만원에서 57,892백만원으로 9,775백만원 증가함.

나.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(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 외 3건)을 위해 정책사업비(기후변화대응강화)를 14,204백만원 증액반영함.

다. 이에따라 정책사업비(기후변화대응강화)는 14,402백만원에서 14,204백만원 증액하여 28,606백만원으로, 예치금은 46,339백만원에서 4,429백만원 감액하여 41,910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.

라. 수입계획 변경내용

○ 예치금회수 9,775백만원 증액

- (당초) 48,117백만원 → (변경) 57,892백만원

< 수 입 부 문 >			
구 분	당 초 (A)	변경 (B)	증 감 (B-A)
계 (순수입)	60,746 (12,629)	70,521 (12,629)	9,775 (-)
융자금회수(이자포함)	8,507	8,507	-
예치금회수	48,117	57,892	9,775
이자수입	1,644	1,644	-
기타수입	2,477	2,477	-

마. 지출계획 변경내용

○ 정책사업비(기후변화대응강화) 14,204백만원 증액, 예치금 4,429백만원 감액

- 「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」 6,500백만원 증액

: (당초) 5,060백만원 → (변경) 11,560백만원

- 「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」 2,000백만원 신규편성

- 「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(2단계)」 4,040백만원 신규편성

- 「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」 1,264백만원 신규편성

- 「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」 400백만원 신규편성

< 지출 부문 >							
구 분	당 초	1차 변경	2차 변경 (A)	3차 변경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C/A*100)	
계 (순지출)	60,746 (10,361)	60,746 (12,417)	60,746 (14,407)	70,521 (28,611)	9,775 (14,204)	16.1% (98.6%)	
정책사업비 (기후변화 대응강화)	계	10,356	12,412	14,402	28,606	14,204	98.6%
	비용자성 사업비	5,856	7,306	9,296	11,702	2,406	25.9%
	융자성 사업비	4,500	5,106	5,106	16,904	11,798	231.1%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5	5	5	5	-	0%
재무활동	예치금	50,385	48,329	46,339	41,910	△4,429	△9.6%

※ 최종 의회 의결액(2차변경, 제306회 임시회)대비 정책사업비(기후변화대응강화) 20% 초과(98.6%)

Ⅲ. 검토의견

-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1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에 당초 수입계획(481억 1,700만원)보다 97억 7,500만원 증액한 578억 9,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
-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난 4월, 동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한 당초 지출계획액 607억 4,600만원 보다 97억 7,5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
 - ①정책사업인 일반예산(재무활동)은 당초 지출계획(463억 3,900만원)보다 △9.6%, △44억 2,900만원 감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,
 - ②다른 정책사업인 **기후변화 대응 강화**의 경우, 당초 지출계획(144억 200만원)보다 98.6%, 142억 4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〈표 3-1〉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출합계	60,746	70,521	9,775	16.1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46,339	41,910	△4,429	△9.6
기 후 변 화 대 응 강 화	14,402	28,606	14,204	98.6
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(기 후 변 화 기 금)	14,402	28,606	14,204	98.6
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	5,060	11,560	6,500	128.5
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용자관리 시 스템 운 영 · 유 지	14	14	-	-
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	1,575	1,575	-	-
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	1,200	1,200	-	-
서울형 햇빛 발전 지원	570	570	-	-
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	20	20	-	-
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지원	1,010	1,010	-	-
에 너 지 자 립 마 을 운 영	646	646	-	-
서울형 에너지혁신지구 조성	200	200	-	-
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	60	60	-	-
제로웨이스트 다화용기 사업자 육성지원	606	606	-	-
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추진	1,000	1,000	-	-
지 하 도 상 가 공 기 질 상 시 모 니 터 링 시 스템 구 축	450	450	-	-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(매입)	1,890	1,890	-	-
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	100	100	-	-
공공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시범사업	-	2,000	2,000	-
목동열원시설 안정화사업(2단계)	-	4,040	4,040	-
노원 열원 시설 보수 공사	-	1,264	1,264	-
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	-	400	400	-
행정운영경비(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)	5	5	-	-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(97억 7,500만원)과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(△44억 2,900만원)을 증·감조정하여 **기후변화 대응 강화**(142억 400만원)중 세부사업인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에 65억원을 증액하고, 4개 신규사업에 77억 400만원을 순증하여 지출하고자 지출계획변경을 요청한 것임
- 그러나 지출계획한 사업중 ①**목동열원시설 안정화사업(2단계)**, ②**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**의 경우,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되지 않아 해당 지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,
 - **공사·공단 등 용자금**을 편성하여 ①**목동열원시설 안정화사업(2단계)**과 ②**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**에 40억 4,000만원과 12억 6,400만원을 각각 지출계획한 것으로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와 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사료되나

〈표 3-2〉 지출계획중 공사·공단 등 용자금 편성 사업

(단위 : 백만원)

	지출계획액	지출계획 사유
기후변화 대응 강화	5,304	
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(2단계)	4,040	
공사·공단 등 용자금	4,040	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(2단계)
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	1,264	
공사·공단 등 용자금	1,264	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

※ 자료근거 : 서울특별시, 환경정책과-23435 ('22. 5.27)

- 행정안전부의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이 정하는 **공사·공단 등 용자금**은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(지방채)을 통해 지방공사·공단에 용자하는 용자금으로 매출공채

즉,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만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이 편성되는 지출과목으로 '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등으로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을 편성할 수 없음

- 더욱이 관련 법은 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, 동 법중 “관련 법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”고 명시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근거가 조례인 경우 사실상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 - 만일 기금운용부서가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출계획한 것이라면,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을 편성요청 하기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「지방채 발행 동의안」이 제출되어야 하나 '22년 6월 현재까지 관련 동의안이 제출된 사실이 없는 바,
 - 지출계획중 ①목동열원시설 안정화사업(2단계)과 ②노원 열원시설 보수공사의 사업내용과는 별개로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은 매출공채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출가능한 법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지출계획한 **공사·공단 등 융자금**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한 세출과목으로 판단됨
- 다음으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중 ③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(3억원)와 행사운영비(1억원)를 신규 지출계획한 것으로

〈표 3-3〉 지출계획중 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 편성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 / 통계목	지출계획액	산출근거
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	400	
민간경상사업보조	300	·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운영 지원 - 분리배출함 2억 5,000만원 - 동아리 활동비 5,000만원
행사운영비	100	· 청년 주도 와우(WOW) 페스티벌 - 행사운영비 1억원

※ 자료근거 : 서울특별시, 환경정책과-23435 ('22. 5.27)

- 관련 법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중 ③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원을 지출계획하여 교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함(2억 5,000만원), 환경 동아리 제로웨이스트 활동비 지원(5,000만원)에 지출계획할 것으로 사료되나
 - 이미 '22년도에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소관 **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**이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을 추가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기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4〉 일반회계 및 기금 사업현황

세부사업	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사업	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
회 계	일반회계	기후변화기금
소 요 예 산	20억원 (본예산 15억원 + '22년 1회 추경 5억원)	3억원
소 관 부 서	기후환경본부 (자원순환과)	기후환경본부 (자원순환과)
사 업 목 적	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	대학생이 주도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
사 업 근 거	·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·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6조	·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·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6조
사 업 내 용	다회용 컵 회수율을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	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함 설치
사 업 장 소	사무실 밀집지역 내 카페 및 대학교	대학교

- 뿐만 아니라 지출계획된 ③**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**중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원은 분리배출함 설치에 2억 5,0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, 활동비 5,000만원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확인되나

- 2억 5,000만원이 지출계획된 분리배출함 설치는 자본형성적 경비일 수 밖에 없음에도 동 지출계획은 소모성 운영비 성격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출계획하고 있어 제출된 지출계획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

- 또한 지출계획된 ③**제로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**은 행사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, 관련 기준은 신규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,

-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와 동일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제출된 지출계획중 행사운영

비(1억원)의 경우에는 '22년 6월 현재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- 아울러 관련 기준을 통해 “신규사업의 경우, 기금 설치목적 부합정도,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”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, 지출계획된 신규사업에 대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사업의 타당성에 부합되는지 지출계획을 심사·의결하기에 앞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지출계획된 신규사업은 '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지출계획된 사업을 심사·의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